

구서역 포르투나 부동산 분양계약 인지세 납부안내

구서역 포르투나 청약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!

▶ 인지세 안내

-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받은 자(본인)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[관련법령]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과 세 대 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 및 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(부부 공동명의 포함)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- 분양계약 진행 시 필수 서류이며 구매방법 확인 후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.

■ 수입인지 구입처

1. 온라인 구매처 : 수입인지 사이트 [www.e-revenuestamp.or.kr]에서 전자수입인지 구매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2. 오프라인 구매처 : 우체국,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구매(구비서류 : 신분증/현금결제가능, 카드결제불가)

■ 가산세 개정사항 [2021.01.01부터 적용] * [관련법령]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제9항

-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100%
-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200%
- 6개월 초과 : 미[과소]납부 세액의 300%

■ 인지세 [전자수입인지] 구매방법 안내

- 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 "전자수입인지" 검색
-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- ③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- ④ 구매 - 납부정보입력
 - ㉠용도 : 인지세 납부 ㉡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 - ㉢금액 : 150,000원 ㉣건수 : 1건 ㉤확인 및 결제
- ⑤ 출력 ※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재발행 불가)